

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02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3. .
제출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정이유

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종합비즈니스센터의 목적, 설치, 사업의 내용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시설을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별표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며 부대시설 사용 시 사용료 감면 근거를 정함(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)
- 다. 종합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 법인에 위탁 및 위탁 취소 사유를 정함(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)
- 라.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는 센터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(안 제8조)
- 마.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실·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(6쪽)
- 나.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(7쪽)

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(이하 “비즈니스센터”라 한다)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 둔다.

제3조(사업) 비즈니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
2.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 관련 업무
3. 중소기업종합제품전시장 운영
4. 중소기업, 소상공인 및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 유치 지원
5.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

제4조(사용허가) ① 비즈니스센터를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료 감면)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30% 감면할 수 있다.

1. 비즈니스센터 입주업체의 행사
2. 인천광역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3. 그 밖의 행정 기관,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기업지원 관련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·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수탁자가 중대한 계약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
3. 공익상 위·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8조(운영지원 등) ①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는 비즈니스센터 수익 재산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잉여금은 수탁자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수탁자는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, 수탁기관의 이사회가 대신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비즈니스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비즈니스센터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4.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운영한다.

④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비즈니스센터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인천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,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, 시정명령,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인천광역시 비즈니스센터 시설 사용료(제4조 관련)

구 분		임 대 료		
사무실	전 세	950,000원/m ²		
	월 세	보 증 금	100,000원/m ²	
		월임대료	5,000원/m ²	
상업시설	식당, 카페, 매점	입찰 및 협의에 의해 결정		
부대시설	대회의장	종일	4,000,000원	
		오전	1,500,000원	
		오후	2,500,000원	
		야간	1,500,000원	
	회의실	대	4시간 이하	150,000원
			4시간 이상	200,000원
		중	4시간 이하	120,000원
			4시간 이상	170,000원
		소	4시간 이하	100,000원
			4시간 이상	150,000원
	세미나실	대	4시간 이하	200,000원
			4시간 이상	300,000원
		중	4시간 이하	150,000원
			4시간 이상	220,000원
		소	4시간 이하	100,000원
			4시간 이상	180,000원

비고) 사무실, 상업시설 관리비용은 별도 부과

실·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 영향평가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○ ○ ○ ○ ○ ○
실·국별 의견수렴결과			
협약개요	실·국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간 - 2010. 1. 28~ 2010. 2. 22 ○ 내용 : 의견 수렴		“의견 없음”	
입 법 예 고 결 과			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제출의견	조치내용
○ 기간 - 2010. 1. 28~ 2010. 2. 22 ○ 방법 - 시보 및 인터넷 게재		“의견 없음”	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

관계법령	“해당 없음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